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1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정소용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3. 8.자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1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C과 2018. 3. 2. C이 실질적으로 시행 및 분양하는 상가인 D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3. 8.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C, 수탁자를 피고, 공동우선수익자를 F조합 및 G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상가건축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7.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2019. 2. 28.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편취범행으로 기소되어 2019. 12. 24.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24. 선고 2019고합21 등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가 C에 대한 고소 및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나 늦어도 위 공소제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존재 및 그것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F조합 및 G조합은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탁법 규정은 수탁자의 악의를 사해신탁 취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나 수탁자의 당사자적격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신탁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위 법리에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F조합 및 G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① F조합 및 G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C과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거래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F조합 및 G조합의 C에 대한 대출 관련 자료상으로도 C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용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내용이 없다.
- ③ F조합 및 G조합은 C에 대한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위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은 합계 114억 원에 이르는 반면, F조합 및 G조합의 대출금은 각 48억 원과 7억 원에 불과하여 F조합 및 G조합과 C의 대출 거래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④ 그러한 상황에서 F조합 및 G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영, 판사 최리니, 판사 김은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56.48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17.0193 끝.

2.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98.864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9.7909 끝.

3.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3.5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4.2071 끝.

4.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0.9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3.4297 끝.

5.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99.3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9.9312 끝.

6.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07.0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2.2636 끝.

7.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215.61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64.9723 끝.

8.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41.84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12.6095 끝.

9.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80.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54.4657 끝.

10.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3.400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4.1710 끝.

11.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289.655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87.2824 끝.

12.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 제4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80.6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54.4464 끝.

13.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5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119.1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35.9067 끝.

14.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5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816.81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46.1327 끝.

15.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6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391.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118.0315 끝.

16. 1동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6층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조

면 적 : 73.5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지권의 종류: 소유

대지권의 비율: 1329.9000분의22.1599 끝.

- 이 상 -

